

보도시점 2025. 12. 24.(수) 조간 배포 2025. 12. 23.(화) 09:00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로 확대(대상계약 60만건, 가입금액 25.6조원) 출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게 12.24일부터 개별안내하고,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가입(‘26.1월~)도 허용
-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10.30일) 이후, 평균 年 455.8만원(月 환산 37.9만원)이 지급되는 등 새로운 노후소득 지원수단으로 활용 중

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상세 설명은 보도자료(8.19일, 10.23일 및 참고1) 참조**

‘26.1.2일부터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¹⁾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²⁾대상 계약은 60만건, 가입금액은 25.6조원(‘25.11월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12월 24일(보험사별 상이)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 * 1)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하고 **모두 출시**
- 2) ‘24.12월말 기준(75.9만건) 대비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보험 해지 등으로 대상계약 감소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시 즉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만 55세 도달 계약자 및 보험료 완납자가 자연 증가하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도 지속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였다. 다만,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소재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접수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도 허용한다.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사항 등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

*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1.2일), 신한라이프(1.30일), iM라이프('26.1분기)가 먼저 운영하며, 이외 생보사는 운영방안 검토 중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실적 분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10.30일) 이후, 12.15일까지 총 1,262건 신청되었다. 총 57.5억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되었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약 455.8만원으로 月 환산시 약 37.9만원(노후적정생활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月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계약 특성>

| 총신청건수 | 신청연령 | 유동화 비율 | 유동화 기간 | 초년도 지급액 |
|--------|-------|--------|--------|---------|
| 1,262건 | 65.3세 | 89.4% | 7.8년 | 455.8만원 |

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약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약 7.8년이다.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III. 향후계획

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 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月지급 연금형 상품 (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年 지급형만 운영)도 '26.3월경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年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들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받는 시점에서 月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하여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
|----------|--------------------|-----|-----|-----|----------------|
| 총괄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책임자 | 과장 | 이동엽 | (02-2100-29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윤세열 | (02-2100-2961) |
| <공동>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 책임자 | 국장 | 이권홍 | (02-3145-7240) |
| | | 담당자 | 팀장 | 김현중 | (02-3145-7652) |
| |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 책임자 | 본부장 | 박순근 | (02-2262-6566) |
| | | 담당자 | 부장 | 홍양희 | (02-2262-6665) |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신청 요건

신청자격

- 신청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재산요건 X)

대상계약*

[^{1)~4)} 모두 충족]

- ¹⁾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 ²⁾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³⁾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⁴⁾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text{유동화 비율} = \frac{\text{감액된 사망보험금}}{\text{사망보험금}}$$

납입보험료
초과 지급

-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대상계약) ¹⁾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담보로서, ²⁾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되었으며, ³⁾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⁴⁾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신청자격)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기납입보험료 초과 설정)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

* 유동화 지급 총액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유동화 조건(유동화 비율 등) 설정 불가

(유동화 기간) 계약자가 연단위로 설정 가능(최소 2년 이상)

(신청비용) 유동화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 없음 (無 사업비)

참고2

소비자가 알아야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Q&A)

Q1.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요?

□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닙니다.

Q2.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안내 (문자 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 10.30일 부터 제도를 시행한 생명보험회사는 5개사*이며,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는 26년 1월 2일에 출시할 예정이며,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 또한, 신청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상품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보험임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불가한 상품 예시

-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단기납종신보험
- CI^{*}선지급, 중도급부가 부가되어 이미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 등

*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 반면, 개별안내(문자 및 알림톡)를 받았더라도, 안내문자 수신 이후 보험계약대출 등이 발생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주계약 유동화 시 특약은 어떻게 되는지?

-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예: 할인특약)은 주계약 감액시 함께 정산처리 되며, 별도의 독립특약은 유동화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4. 유동화를 신청하면 종신보험 계약 당시 보장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가입하신 종신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시 지급받는 사망 보험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Q5. 유동화 신청 시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된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유동화 이용 중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감액 등 주계약의 계약자 적립금이 변경되는 제도나 옵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청서의 주요 안내사항 및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사망보험금이 동일하게 1억원으로 설정된 2개의 보험계약을 보유 중인데, 유동화 신청에 따른 지급금이 왜 다른가요?

-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율, 신청시 나이, 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므로 사망보험금이 같더라도 회사별, 상품별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7. 유동화 기간을 너무 길게 신청하였습니다. 유동화 기간을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유동화 기간 및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동화 중단 후 비율과 기간을 변경하여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Q8. 매년 수령하는 유동화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나요?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매년 예정된 이율로 부리되어 증가하므로 이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유동화 금액도 역시 매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유동화비율 80%, 20년 지급 신청 시 매년 $4\%(80\%/20\text{년})$ 의 비율로 감액처리되어 지급되며, 나머지 환급금은 예정된 이율로 부리됨

Q9. 신청시 수익자 동의는 필수인가요?

- 유동화의 재원인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뜻으로 수익자 동의가 없더라도 유동화 신청은 가능하며,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알림톡(기명 수익자에 한하여) 등으로 통지합니다.

Q10.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인가요? 변동될 수도 있나요?

- 신청시 안내되는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유동화 지급시 수령하는 금액과 동일하나(세전 기준), 중지 및 재신청(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